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8534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78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85346 판결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11. 13.

판결 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918,978원 및 그 중 195,157,512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1.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4. 체결된증여계약을 241,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41,9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4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2. 30.(이후 2013. 12. 27.까지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였던E과 주식회사 뉴젠팜(이하 '뉴젠팜'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2011. 10.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2. 19.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12. 31.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40,000,000원의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11. 12. 30.에서 2012. 12. 28.까지로, 그 후 2013. 12. 27.까지로 연장해오다가 2013. 12. 27.까지 신한은행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8.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잔여원금 937,015,634원, 이자 16,375,390원 합계 953,391,0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758,233,512원을 회수하여서 잔존대위변제금은 195,157,512원(=953,391,024원 - 758,233,512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761,466원이다.

회수일	회수금(원)	기간	일수	손해금율(%)	지연손해금(원)
2014. 4. 29.	328,968,781	2014. 4. 8. - 2014. 4. 29.	22	12	2,379,390
2014. 4. 30.	65,138,141	2014. 4. 8. - 2014. 4. 30.	23	12	492,551
2014. 6. 30.	50,000,000	2014. 4. 8. - 2014. 6. 30.	84	12	1,380,821
2014. 9. 3.	65,000,000	2014. 4. 8. - 2014. 9. 3.	149	12	3,184,109
2014. 11. 28.	50,000,000	2014. 4. 8. - 2014. 11. 28.	235	12	3,863,013
2014. 12. 31.	50,000,000	2014. 4. 8. - 2014. 12. 31.	268	12	4,405,479
2015. 3. 31.	49,126,590	2014. 4. 8. - 2015. 3. 31.	358	12	5,782,132
2015. 6. 30.	50,000,000	2014. 4. 8. - 2015. 6. 30.	449	12	7,380,821
2015. 9. 30.	50,000,000	2014. 4. 8. - 2015. 9. 30.	541	12	8,893,150
합계	758,233,512				37,761,466

마. 피고 B은 2013. 7.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내인 피고 C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을 42,000,000원으로 하는 2009. 11.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09. 11. 17.자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하나은행, 채권최고액을 18,000,000원으로 하는 2011. 10.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1. 10. 28.자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3. 11. 15. 위 2011. 10. 28.자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918,978원(잔여 구상금 195,157,512원 + 확정지연손해금 37,761,466원) 및 그 중 195,157,512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1.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뉴젠팜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형식적인 채무자이고, 실질적인 채무자는 뉴젠팜이며, 원고는 뉴젠팜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뉴젠팜으로부터 지속적인변제를 받아왔는바 원고 또한 뉴젠팜이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여 피고 B은 실질적인 보증인이 될 의사조차 없다.

2)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뉴젠팜과 피고 회사는 2010. 12. 30. '피고 회사가 뉴젠팜의 책임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 중 9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뉴젠팜의 채무금액변제로 대출금 전액을 대납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되는 즉시 대출금 전액으로 뉴젠팜의 채무를 대납하고, 뉴젠팜은 대출금 중 940,000,000원에 대한 수수료 및 매월 발생하는 대출이자 및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뉴젠팜이 책임지고 피고 회사에게 납입일 하루 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 회사가 뉴젠팜에게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5330호대여금 사건에서 뉴젠팜은 '피고 회사가 뉴젠팜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며 뉴젠팜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원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자이다'라는 점을 인정한 사실, 뉴젠팜이 2014. 4.30.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채무를 변제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와 뉴젠팜 사이의 위 약정에 의하더라도 당초 뉴젠팜이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직접 변제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뉴젠팜이 피고 회사에게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면 이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정하였으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뉴젠팜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바, 설령 피고 회사와 뉴젠팜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뉴젠팜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피고 회사가 주채무자로, 뉴젠팜은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되었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사이에서 위와 같은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의 법률상 효과를 뉴젠팜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3. 7. 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4. 4. 8. 발생하였으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은 2011. 12. 19. 이루어졌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해 오던 상황이어서 자금 사정의 악화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4. 8.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014. 12. 22.자 및 2015. 8. 2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1. 15.경 시가는 273,000,000원인데, 반면, 피고B은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채무 232,918,978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009. 11. 17.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0,000원, 2011. 10.2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37,80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11. 17.자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35,000,000원인 사실, 또한 2011. 10.28.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15,037,800원인 사실, 피고 C은 위 증여계약 이후 위 2011. 10. 28.자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5. 7. 23.을 기준으로 292,000,000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가액인 292,000,0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인 50,037,800원(= 15,037,800원 +35,000,000원)을 공제한 241,962,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1),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41,9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김두희, 판사 정혜승

1)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금 232,918,978원 및 그 중 195,157,512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1. 11.까지 279일 동안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7,901,023원과,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3.까지 306일 동안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4,541,725원의 합계 275,361,726원으로 위 취소 범위를 초과한다.